
‘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대진단 계획

- ◇ 국가안전 대진단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대진단 계획』 임
- ※ 주택단지·도시공원·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 일제점검

2016. 1.



국민안전처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침	1
III. 추진 계획	2
1. 관리주체 자체점검	2
2. 민·관 합동점검	3
IV. 추진 일정	4

- 참고자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 현황
2.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대진단 계획

I 추진 배경

- 최근 5년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한해 평균 1,044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

769건^(11년) → 1,000^(12년) → 1,012^(13년) → 1,369^(14년) → 1,071^(15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놀이시설(유기기구 포함) 안전사고 현황”

-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민관합동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문제점 발굴, 개선
-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전국 66,31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 주택단지(32,658개), 도시공원(8,913개), 어린이집(8,665개), 유치원(7,571개), 학교(6,325개) 등

II 추진 방침

- 전국 어린이놀이시설(66,311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민관합동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 정밀 안전진단 실시
-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 검사기관(7개) 및 지원기관(15개), 제조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 등
- 법상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해요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Ⅲ 추진 계획

□ (1단계) 관리주체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16. 2. 15 ~ 2. 26 (12일간)
- 점검대상 : 도시공원, 주택단지 등 66,311개소 전수점검
- 점검자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놀이기구별 점검표(서식1)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 중점 점검내용 >

- ▶ (공 통)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균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 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 고무) 상태
- ▶ (놀이기구)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

⇒ 관리주체는 점검결과를 3.2일까지 해당 시·군·구(지역교육청)에 제출(서식2)

□ (2단계) 민·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6. 3. 7 ~ 3. 25 (19일간)
- 점검대상 : 5,000여 개소 표본점검(전체시설의 5~10%)
 - 시·군·구별(교육청) 전체 시설수가 200개소 이내일 경우 10% 선정

< 중점 선정대상 >

- ▶ 안전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참고1) 우선 선정
- ▶ 관리주체 자체점검(1차)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우선 선정
-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 ※ '15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표본점검 시설은 선정 제외

- 점 검 자 : 민·관 합동점검팀 구성, 점검
 - (시 · 도) 시·도 안전총괄과장 총괄, 안전진단 확인반을 구성하여 시·군·구별 안전점검 실태 확인·지도
 - (시·군·구) 시·군·구별로 ‘안전총괄과장’ 총괄하에 민·관 합동점검단을 지역 실정에 맞게 1~3개 팀(팀당 3명, 소관과 포함)을 구성·점검
 - * 민간전문가 : 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지원기관, 제조·유지관리 업계 등 종사자 활용
- 점검방법 :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서식3)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 중점 점검내용 >

- ▶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 (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인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조치상태(참고2)
 - *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
 -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 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 각 시·도는 점검결과를 취합, 3.31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서식4)

IV

추진 일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계획 통보(국민안전처→시도) : 1.16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실시(서식1) : 2. 15 ~ 2. 26
 - * 관리주체는 점검결과를 3.2 까지 각 시·군·구(지역교육청)에 제출(서식2)
- 시·군·구(지역교육청)별 “민·관 합동점검” 실시(서식3) : 3. 7 ~ 3. 25
 - * 시·도(교육청)는 시·군·구별 점검결과를 취합, 3.31 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서식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대진단 결과 보고 : '16. 4. 15

참고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이행현황

(단위 : 개소, '15.12.31기준)

시도	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가입	미가입	이수	미이수
계	66,311	65,785	526	64,347	1,964	65,287	1,024
서울	9,243	9,008	235	8,346	897	9,069	174
부산	3,635	3,615	20	3,573	62	3,567	68
대구	3,087	3,059	28	2,898	189	3,011	76
인천	3,459	3,419	40	3,264	195	3,358	101
광주	2,306	2,288	18	2,267	39	2,250	56
대전	1,965	1,959	6	1,956	9	1,957	8
울산	1,624	1,623	1	1,609	15	1,605	19
세종	441	441	0	402	39	424	17
경기	17,256	17,214	42	17,197	59	17,188	68
강원	2,622	2,593	29	2,522	100	2,545	77
충북	2,516	2,498	18	2,473	43	2,429	87
충남	3,174	3,165	9	3,150	24	3,138	36
전북	2,925	2,892	33	2,812	113	2,849	76
전남	2,805	2,799	6	2,781	24	2,782	23
경북	3,762	3,755	7	3,742	20	3,728	34
경남	4,583	4,561	22	4,450	133	4,484	99
제주	908	896	12	905	3	903	5